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07
----------	------

발의연월일 : 2017. 8. 11.

발의자 : 한정애 · 서영교 · 김수민

백재현 · 이학영 · 윤영일

제윤경 · 김영진 · 강병원

권미혁 의원(10인)

제안이유

실내 사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시행중이나 동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가 없고,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및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안 제11조제3항 신설)

환경부장관이 사전적합확인 받은 건축자재를 사후검사한 결과 방출기준 초과 시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를 명령하고, 제조·수입업자에게 회수 등 조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안 제11조의2 신설)

-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시험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법정기관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민간기관으로 함.
- 2)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에 적합판정을 받은 후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다.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안 제11조의3 신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지정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라. 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안 제11조의4 신설)

- 1)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한 경우 시험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 2)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하거나, 확인의 절차·방법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은 1년 이내 기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마.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안 제11조의5 신설)

시험기관 및 시험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시험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바. 건축자재의 표지(안 제11조의6 신설)

1)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방출시험 확인을 받은 제품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2)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후점검 결과 확인 취소된 제품은 표지 사용을 금지함.

사. 측정의뢰인의 준수사항(안 제12조제2항 신설)

측정의뢰인은 측정기록부와 측정대행 계약문서를 3년 보존하고, 측정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함.

아. 보고 및 검사(안 제13조제4항 신설), 청문(안 제13조의2 신설)

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및 시험기관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2)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 지정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자. 벌칙 및 과태료(안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3항)

1) 방출기준 초과자재의 확인 취소 및 회수 등 조치명령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측정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2) 안 제11조의6을 위반하여 확인받은 제품에 표지 미부착 또는 확인 취소된 제품에 표지를 부착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수입자 및 시험기관이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을 “제11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종전의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 중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분석한 결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방출기준 초과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회수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제4항에 따른 회수 등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자 및 시험기관은 환경부장관

2.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제11조의7부터 제11조의10까지로 하고,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②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기관은 환경부장관에게 지

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에 적합 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험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 또는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기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시험기관 지정절차, 숙련도 시험, 지정서의 발급, 변경신청, 그 밖에 시험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이나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7.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8.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9.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

관 및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 ①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건축자재가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다고 확인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인 취소된 제품은 동 표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측정횟수”를 “측정횟수, 측정시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정을 의뢰하려는 자(이하 “측정의뢰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측정대행업자가 측정 후 작성·제출한 측정기록부와 측정대행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3 중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및 시험기관은 환경부장관
2.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제13조의3부터 제13조의5까지로 하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2조의3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법률 제14486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1항에 제3호

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제3항에 따른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에 대한 확인의 취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제11조의2제1항 각 목의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6. 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7. 제12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한 자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의6을 위반하여 확인받은 제품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확인 취소되었으나 표지를 부착하여 해당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 제16조제3항제3호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1조제6항”을 “제11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자재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건축자재의 표지에 관한 제1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11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건축자재의 경우 이 법 시행 후 공급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별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신 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확인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확인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확인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확인업무를 기피한 경우

③ · ④ (생 략)

⑥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없는 한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방출기준 초과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회수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제4항에 따른 회수 등 조치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⑦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⑧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또
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 제
2항에 따른 건축자재를 제조·수
입하는 자 및 시험기관에 대하
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관
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건축자재를 제
조·수입하는 자 및 시험기관
은 환경부장관
2.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
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11조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 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
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국건설기술연구원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②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기관은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에 적합 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험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 또는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기관이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
야 한다.

⑤ 시험기관 지정절차, 숙련도
시험, 지정서의 발급, 변경신청,
그 밖에 시험업무에 필요한 사
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
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
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신 설>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이나 제11조의5제1
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
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
우

7.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
청을 한 경우

8.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9.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
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
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
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

<신 설>

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및 시험기관에 종사하
는 자는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
과의 기록·보존 등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
하여 확인의 시험·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 ①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
는 자는 해당 건축자재가 제11
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건축
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
니하다고 확인 받은 경우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
인을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
항에 따라 확인 취소된 제품은

	<u>동 표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u>
<u>제11조의2 ~ 제11조의5 (생 략)</u>	<u>제11조의7 ~ 제11조의10 (현행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와 같음)</u>
<u>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생 략)</u>	<u>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현행과 같음)</u>
<u><신 설></u>	<u>② 제1항에 따라 측정을 의뢰하려는 자(이하 “측정의뢰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 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p><u>1. 측정대행업자가 측정 후 작성·제출한 측정기록부와 측정 대행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u></p> <p><u>2.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③ ----- ----- 측정 횟수, 측정시기, ----- ----- -----.</u></p>
<u>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u>	<u>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u>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③ (생략)</p> <p>〈신설〉</p> <p>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p>	<p>음)</p> <p>〈삭 제〉</p> <p>⑤ ----- 제3항 ----- ----- ----- -----.</p> <p>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및 시험기관은 환경부장관2.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p>⑤ ----- -----</p>
---	---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4항-----

-----.

-----.

⑥ ----- 제5항-----

-----.

⑦ ----- 제4항-----

-----.

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2조의3에 따른 센터의 지

<p><u>제13조의2</u> ~ <u>제13조의4</u> (생 약)</p>	<p><u>정 취소</u> <u>제13조의3</u> ~ <u>제13조의5</u> (현행 제 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와 같음)</p>
<p>법률 제14486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p>	<p>법률 제14486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p>
<p>제1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4조(벌칙) ①----- ----- -----.</p>
<p>1. · 2. (생 약) <u><신 설></u></p>	<p>1. · 2. (현행과 같음) <u>3. 제11조제3항에 따른 방출기</u></p>
	<p><u>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에 대</u> <u>한 확인의 취소 및 같은 조 제</u> <u>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u> <u>령을 위반한 자</u></p>
<p><u><신 설></u></p>	<p><u>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u> <u>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u> <u>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u> <u>자</u></p>
<p><u><신 설></u></p>	<p><u>5. 제11조의2제1항 각 목의 시</u> <u>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u> <u>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u> <u>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u></p>
<p><u><신 설></u></p>	<p><u>6. 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u> <u>처분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u></p>

<신 설>

② 삭 제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4. 제11조제6항에 따른 자료제

자

7. 제12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과태료)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의6을 위반하여 확인 받은 제품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확인 취소되었으나 표지를 부착하여 해당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제7항-----

-----.

4. 제11조제8항-----

<p>출 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5. · 6. (생 략) 7. 제13조제1항부터 <u>제3항까지</u>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u><신 설></u> ④ (생 략)</p>	<p>----- ----- ----- ----- ----- 5. · 6. (현행과 같음) 7. ----- <u>제4항</u>----- ----- ----- ----- ----- ----- 8. <u>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u> ④ (현행과 같음)</p>
---	--